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65
------	------

제출일자 : 2024. 8. 22.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 1. 제안이유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5. 16. 공포 및 2024. 5. 17.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구 문화재)”에 대한 용어 및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 “문화재” → “국가유산”(안 제1조부터 제3조)
- “문화재” → “문화유산”(안 제4조)
- “문화재청장” → “국가유산청장”(안 제4조)
- “문화재보호구역” → “국가유산 보호구역”(안 제5조)

나. 인용조문 정비

-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 및 제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기관: 조례 소관부서와 협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24. 6. 28. ~ 2024. 7. 18.) 결과: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규제사무 없음(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중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문화관광시설의 시설물의 종류란 다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문화재에 대한 감면)”을“(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u>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u> 수리공사도 포함한다.</p> <p>2.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u>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u> ----- -----.</p> <p>2. ~ 4. (현행과 같음)</p>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p> <p>1. ~ 4. (생략)</p> <p>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p>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국가유산</u> ---</p>

의 위치표시 6. (생략)	----- 6. (현행과 같음)
-------------------	----------------------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1] 2. 그 밖의 공공시설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분류</th> <th>시설물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문화 관광 시설</td> <td>가. ~ 나. (생략)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td> </tr> </tbody> </table>	분류	시설물의 종류	문화 관광 시설	가. ~ 나. (생략)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별표 1] 2. 그 밖의 공공시설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분류</th> <th>시설물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문화 관광 시설</td> <td>가. ~ 나. (생략)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td> </tr> </tbody> </table>	분류	시설물의 종류	문화 관광 시설	가. ~ 나. (생략)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분류	시설물의 종류								
문화 관광 시설	가. ~ 나. (생략)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분류	시설물의 종류								
문화 관광 시설	가. ~ 나. (생략)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국가유산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 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 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 ~ 4. (생략)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 한) ① ----- -----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 1. ~ 4. (현행과 같음)



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가유산 보호구역 안-----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 박민지
연 락 처	2627 - 1110

#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